

# 대학원 보건학과 운영 내규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보건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보건학과 소속 교수들은 보건학과 박사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논문지도

### 제4조 (지도교수의 선정)

1. 학생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2. 논문 지도 교수 변경시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

## 제4장 자격시험

### 제5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1. 보건학과의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각 전공에 따라 진행한다.
2. 보건행정, 보건학, 구강보건전공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학진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시 4과목을 면제한다 (단, 이 중 최소 한 편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건복지 전공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4과목을 면제한다(단, 이 중 최소 한편은 지도교수와 공동저자로 하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건위생 전공의 경우 종합학력 면제기준 없음. 반드시 종합학력시험을 응시한다.

5. 원예치료 전공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4과목을 면제한다.

(단, 이 중 최소 한편은 지도교수와 공동저자로 하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2.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시행한다.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출제 및 공동평가 한다.

4.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7조 (외국어시험 과목)**

1.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2. 외국인 학생의 영어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하다.

### **제6장 학과 운영위원회**

#### **제12조 (의사결정 방식)**

1.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